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운영내규

[구 :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대학원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1988. 11. 23.
개정: 1990. 3. 29.
개정: 1990. 6. 16.
개정: 1993. 8. 27.
개정: 1995. 4. 1.
개정: 1996. 4. 18.
개정: 1999. 6. 5.
개정: 2001. 6. 9.
개정: 2003. 8. 29.
개정: 2005. 1. 3.
개정: 2008. 11. 14.
개정: 2012. 6. 9.
개정: 2018. 1. 29.
개정: 2020. 12. 2.
전문개정: 2021. 6. 14.

주관부서: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유관부서: 대학원 교학처 교학행정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운영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토목환경공학과와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토목환경공학과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대학원생의 구분) 토목환경공학과 대학원생은 전일제(full-time) 학생과 비전일제(part-time) 학생으로 구분한다. 전일제 학생이란 1주일에 4일 이상을 등교하여 수강 및 연구활동을 하는 학생을 뜻한다.

제2장 입학

제4조(우수학생의 유치) 토목환경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토목환경공학과 각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5조(지원자격)

- ① 연계과정은 2학기 이내 학부 졸업예정자로서, 학부과정의 평균 평점 3.0 이상 혹은 직전 학기 평점 3.5 이상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 ②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지원자 중 유사학과를 졸업한 자의 입학은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규정 이외의 의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박사학위과정 지원자 중 지원 전공과 다른 전공의 석사학위 소지자,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직장을 가진 자의 입학은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반적인 규정 이외의 의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 지원자 중 연구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주저자로 게재된 2편 이상의 논문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업

제6조(보충과목의 이수) 박사과정 재학생 중 다른 전공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 및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최소 6학점 이상의 보충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비전일제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 비전일제 학생의 학기당 취득학점은 6학점 이하를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이 취득학점은 연구지도학점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장 학위청구

제8조(종합학력시험)

- ① 종합학력시험은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모든 대학원생이 응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면제기준은 두지 않는다.
- ②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 ③ 종합학력시험의 합격점수는 각 과목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9조(논문발표회)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학기 시작 후 7주에서 10주 사이에 학과 교수와 대학원생의 참여 하에 논문발표회를 시행한다. 논문발표회에서는 예비발표 및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제10조(예비발표)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석사과정 학생은 심사신청 당해 학기에, 박사과정 학생은 심사신청 최소 1개 학기 이전에 논문발표회에서 예비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심사)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예비발표 이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한 뒤에 논문발표회에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 예비발표 이후에 논문의 주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비발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예비심사에서는 신청논문의 완성도를 평가하여 논문심사 단계로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며, 학과 교수 4분의 3 이상 참석, 참석 교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논문심사신청 요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규정된 요건 외에 다음 각 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연구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청구하는 경우, 예비발표 시점에 연구재단등재(후보)지에 주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확정된 1편 이상의 논문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예비심사 시점에 100% 이상의 논문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실적 점수의 계산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연구재단등재(후보)지 1편은 100%, SCI(E)등재지 1편은 200%로 한다. 이외의 학술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2. 저자 수에 따른 환산율은 다음과 같으며,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저자 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환산율	100%	70%	50%	30%

제5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3조(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의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 학과 교수 2분의 1 이상 참석(위임 포함), 참석 교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2021. 6.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